

- 대구광역시달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제 안 설 명 서

2024. 9.



**대구광역시 달서구**  
<http://www.dalseo.daegu.kr>

**[보건행정과]**

# 제 안 설 명 서

설 명 자: 보건행정과장

대구광역시달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본 조례의 제안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개정에 따른 지자체 조례 위임사항에 의해 식품위생업소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舊 보건증) 수수료 금액을 명시하여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출 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 제3조 관련, [별표2] 제증명 발급 수수료 중, 3번 건강진단결과서 금액을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정한 수수료’ 에서 금액 ‘3,000원’ 으로 변경하였습니다.
  - 그밖에 관련 인용 법률명 정비로,
  - 안 제4조제2항제4호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로,
  - 같은 항 제5호 중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로,
  - 같은 항 제8호 중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

- 본 조례안은 2024년 7월 22일부터 2024년 8월 12까지 21일간 입법 예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행정규제 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검토결과 전체 ‘원안동의’ 였으며,
- 2024년 9월 5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개정에 따른 비용추계사항은 비대상이며,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대구광역시달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개정에 따른 지자체 조례 위임사항에 의해 식품위생업소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舊 보건증) 수수료 금액을 명시하여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으며,
-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구광역시달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2024. 9.  
제출자: 달서구청장  
(보건행정과장)

## 1. 제안이유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개정에 따른 지자체 조례 위임사항에 의해 식품위생업소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 금액을 명시하여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정비함.

## 2. 주요내용

- 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 금액(3,000원) 명시[별표2]
- 나. 인용 법률명 정비(안 제4조제2항제4호, 제5호 및 제8호)

## 3. 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 4. 신·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 5.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역보건법」 제25조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기타사항

- 1) 입법예고(2024. 7. 22.~8. 12.)결과: 의견없음
- 2) 행정규제 심사 결과: 해당사항 없음
- 3) 비용추계서: 비대상
- 4) 부패영향평가 검토 결과: 원안동의
- 5)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 6)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 가결

## 대구광역시달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 중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을 “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을 “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을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p> <p>① (생 략)</p> <p>② 대구광역시달서구에 주소를 둔 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단, 관련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사람에 한정한다.</p> <p>1. ~ 3. (생 략)</p> <p>4.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p> <p>5.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p> <p>6. 7. (생 략)</p> <p>8.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북한이탈주민</p> <p>9. (생 략)</p>	<p>제4조(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p> <p>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p> <p>6. 7. (현행과 같음)</p> <p>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원에 관한 법률」----- -----</p> <p>9.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제증명 발급 수수료(제3조 관련)			[별표 2] 제증명 발급 수수료(제3조 관련)		
구 분	기 준	금 액	구 분	기 준	금 액
1. 건강진단서	1통	500원	1. 건강진단서	1통	500원
2. 일반진단서	1통	500원	2. 일반진단서	1통	500원
3. 건강진단결과서	1통	<u>「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서 정한 수수료</u>	3. 건강진단결과서	1통	<u>3,000원</u>
4. 운전면허 적성검사서	1통	500원	4. 운전면허 적성검사서	1통	500원
5. 사체검안서	1통	5,000원	5. 사체검안서	1통	5,000원
6. 사망진단서	1통	500원	6. 사망진단서	1통	500원
7. 의료기록(방사선 촬영 영상) 사본 발급	1장	3,000원	7. 의료기록(방사선 촬영 영상) 사본 발급	1장	3,000원
8. 증명서 재(추가)발급	1통	500원	8. 증명서 재(추가)발급	1통	500원
9. 기타 사실·공부 등에 의하여 발급하는 증명서	1통	1,000원	9. 기타 사실·공부 등에 의하여 발급하는 증명서	1통	1,000원

## **【관 계 법 령】**

### **□ 지역보건법**

제25조(수수료 등)

- ① 지역보건의료기관은 그 시설을 이용한 자,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 또는 진료를 받은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와 진료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수수료) 보건소에서 제2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보건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8. 3. 28., 2023. 11. 22.>